



보도	2022.8.24.(수) 조간	배포	2022.8.24.(수)		
담당부서	신속민원처리센터 은행·금투민원팀	책임자	팀 장	권재순	(02-3145-5762)
		담당자	수 석	김지정	(02-3145-5778)

## '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 (은행) - 개인형퇴직연금(IRP) 계좌개설 및 운용 시 유의사항 -

### ■ 소비자경보 2022-8호

등급	<b>주의</b> 경고 위험
대상	금융소비자 일반

### 소비자경보 주요 내용

- ◆ 신속민원처리센터는 '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하여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
- 금융권역별 주요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통합정보는 금융거래 전반의 최근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설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
- 은행권역은 퇴직/은퇴 후 노후설계를 위한 정책상품인 개인형 퇴직연금(IRP)의 계좌개설 및 운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

#### [소비자 유의사항]

- ❶ IRP계좌 가입 및 해지는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.
- ❷ 은행을 통해 IRP에 가입하더라도 반드시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.
- ❸ 확정기여형 퇴직급여(DC) 수령목적으로 IRP계좌를 개설한 경우 퇴직급여 수령방식(현물 또는 현금)을 명확히 의사표시 하여야 합니다.

## I.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

- 금융환경 급변, 복잡한 상품구조 및 판매채널의 다양화 등으로 합리적 소비생활을 위해 시의성 있는 금융지식이 요구되는 상황
  - 금융권역별 주요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통합정보는 금융거래 전반의 최근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설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
- ➔ 신속민원처리센터는 '22년 상반기 민원처리 결과를 분석하고, 은행 부문을 시작으로 중소·생보·손보·금융투자 부문의 권역별 금융 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

## II. 소비자 행동요령

### 1 IRP의 가입 및 해지는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.

- 김OO는 '17.12월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IRP계좌를 개설하고 월 10만원씩 총 540만원을 납부
  - '22.5월 IRP해지 시 수령액이 납입원금에 미치지 못하자 원금보장형 상품에 가입했는데도 원금 손실이 발생하였다며 민원 제기
    - \* 김OO은 원금보장을 위해 1년 만기 은행예금 100%로 상품운용을 선택
- ➔ 은행(퇴직연금사업자)이 관련법에 따라 자산매도 금액에서 세액공제분 등을 차감하기 때문에 납입원금에 미달할 수 있음

- IRP\*는 퇴직시 퇴직급여를 지급받거나, 노후설계 및 세액공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상품

\* 개인형퇴직연금(Individual Retirement Pension, "IRP")

- IRP는 중도해지 시 자산매도 금액에서 이미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차감되어 해지로 인한 손실이 클 수 있습니다.

※ 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세액공제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명

- IRP는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6.5%가 부과됩니다.

※ 부득이한 중도인출 사유(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, 개인회생 및 파산, 천재지변 등)를 소명할 경우 저율과세 적용 : 16.5% 대신 3.3~5.5% 적용

## 2 은행 IRP가 반드시 원금보장형 상품은 아닙니다.

- 2년차 직장인 박OO는 '21.12월 연말정산에 압박하여 IRP계좌를 개설하면서 70만원을 납부하였으나 '22.4월 계좌확인 과정에서 약 15만원 원금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

- 은행직원이 '세액공제용, 정기 예·적금 같은 상품'으로 설명하여 안전하다고 믿고 가입하였는데 원금손실이 발생하였으니 불완전 판매에 해당한다는 민원 제기

➔ 신청인이 주장하는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, 신청인이 펀드상품으로 운용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민원신청 기각

- IRP 운용시 은행 예·적금과 같은 원금보장을 희망할 경우 그러한 내용으로 운용지시를 하여야 합니다.

※ IRP계좌에서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예금, 펀드, ETF, 리츠 등으로 다양하며, 금융권역·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투자성향에 따라 운용지시 할 필요

3

**확정기여형 퇴직급여(DC) 수령목적으로 IRP계좌를 개설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수령방식(현물 또는 현금)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.**

- 직장인 손OO는 '17.1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(DC)에 가입하고, '22.3월 퇴사 시 퇴직금 수령을 위해 같은 은행에서 IRP계좌를 개설
  - 운용 중이던 상품(현물)이 그대로 IRP계좌로 이전되기를 희망하였으나 은행이 임의환매하여 현금입금한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 제기
- ➔ 은행 퇴직급여 신청서 신청란(선택적 기재)에 현물이전 희망의사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, 이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은행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

[퇴직급여신청서 양식(예시)]

3. 퇴직금 지급신청 정보 ※ 필수 외의 부분은 해당 시 반드시 기재			
입사기산일자*(필수) <small>작성요령 주3) 참고</small>	퇴사일자(필수) <small>작성요령 주3) 참고</small>	지급신청일자(필수) <small>작성요령 주3) 참고</small>	임원여부 (필수) <input type="checkbox"/> 임원 <input type="checkbox"/> 근로자 <small>작성요령 주3) 참고</small>
* 중간정산을 하지 않은 가입자 : 최초 입사일자 중간정산을 한 가입자 : 최종 중간정산일 다음날			임원퇴직 소득한도 <small>(임원의 경우만 기재) (한도초과시 하단의 회사반환계좌 기재)</small>
2012.12.31 이전	제외월수	가산월수	지급형태 (필수) (택 1)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형IRP <input type="checkbox"/> 현물이전 신청 - 당행 IRP만 가능 / 미납퇴직금 입금 불가 <input type="checkbox"/> 일시금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형IRP & 일시금 (비율/금액택1기재) IRP입금비율(%) IRP입금액(₩)
2013.01.01 이후			
지급사유 (필수)	<input type="checkbox"/> 자발적퇴직(중도) <input type="checkbox"/> 사망 <input type="checkbox"/> 해의이주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)		<input type="checkbox"/> 55세 이후 퇴직자 <input type="checkbox"/> 300만원 이하 <input type="checkbox"/> 한시적 체류자격 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국인근로자
퇴직금 정보	미납퇴직금 입금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 (₩ ) <small>작성요령 주4) 참고</small>	미납퇴직금 수납방법 <input type="checkbox"/> 영업점 입금 <input type="checkbox"/> 특약거래에 의한 무통장 연동 지급	

○ 확정기여형 퇴직급여(DC) 수령목적으로 IRP를 개설한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수령방식을 표시할 필요

- (현물) 퇴직급여(DC)에서 운용하던 금융상품을 IRP계좌로 그대로 이전
- (현금) 퇴직급여(DC)에서 운용하던 금융상품을 모두 현금으로 청산하여 이를 이전

※ 비교 사례

□ A은행의 확정기여형 퇴직급여(DC) 가입자인 甲은 운용 중이던 ETF를 A은행의 IRP계좌로 현물이전 신청하였으나, 은행직원의 전산 미등록으로 ETF가 매도됨

➔ 민원 처리결과 : 동일상품·수량 재매입 부족액을 현금 배상하도록 합의권고

※ 상기 소비자 유의사항은 금감원 기 보도자료 등에서 민원사례 관련 내용을 참조한 것으로 IRP 일반 세부 안내는 기 보도자료 참조

- ▶ (21.11.2.) 금융꿀팁 200선(123) 개인형 퇴직연금(IRP)와 연금저축, 차이점을 알고 가입하세요.
- ▶ (21.12.8.) 금융꿀팁 200선(124) 개인형퇴직연금(IRP) 가입시 유의사항
- ▶ (22.1.25.) 금융꿀팁 200선(125) 불가피하게 연금계좌(IRP, 연금저축)를 중도인출할 경우, 저율과세되는 인출사유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하세요.

※ 금융감독원 시아나운서가 전하는 소비자경보 동영상은 SNS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

- ① 유튜브 : <https://youtu.be/-jpwZnw2J7k>
- ② 페이스북 : <https://fb.watch/f30HKxvdfN/>
- ③ 네이버TV : <https://tv.naver.com/v/28720659>